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0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25.)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의원)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규정

현행법은 수목진료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하거나 치

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모든 활동’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나무병원의 업무 범위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목진료의 정의에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樹勢)의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치료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의 회복을 포함하는 등 수목진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수목진료의 범위에 수세(樹勢) 유지·관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수목진료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존 조경식재공사 등 다른 업역을 침해하고 분쟁 야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됨.¹⁾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나무병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뿌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u>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u> 등

입법취지, 산림청의 의견, 관련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법문의 용어 중 “수세”²⁾는 나무가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세 회복”을 “수세(樹勢) 회복”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나. 나무병원 미등록자의 예외적 수목진료 범위의 구체화 등

수목진료제도는 가로수, 공원, 공동주택 등 생활권 수목진료를 수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방역소독업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 및 건강 등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고, 수목진료 분야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를 통한 수목병해충의 처방, 예방 및 방제 등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됨.

동 제도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모든 행위(이하 “수목진료”)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가진 “나무의사” 및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수목치료기술자” 등 인적·물적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현행법은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세’는 총 14개의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중 개정안과 같이 한자가 병행 표기되지 아니한 ‘수세’의 정의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던 이혼 증서’를 의미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ii)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무병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림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병해충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의 기술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점, 수목 소유자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으로, 수목진료 규정의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동주택³⁾에서 개별 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들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고용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⁴⁾

3)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 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법제처는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②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이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

이에 개정안은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범위를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서 긴급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한편, 기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적용대상에서 300세대 이상인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서식하는 수목을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 중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의 예외적 경우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이 공익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제한대상이 결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⁵⁾에서는 의무적 소독 대상 시설로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관리 형태의 공동주택의 경우 나무병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참고자료1 참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안에서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관련성이 미약한 세대수 기준(300세대 이상)으로 자치관리 형태의 공동주택도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직접 또는 위탁의 형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⁶⁾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세대 수 및 시설 등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⁷⁾을 정의하고 별도의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획일적인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됨.

둘째, 법률은 집행자와 수범자를 고려하여 구속력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의 수범자인 수목 소유자(개인, 법인, 단체, 공동주택 등) 중에서 300세대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를 의무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소유자 중 세대수라는 단일의 기준을 설정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나무병원에 의한

6)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들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수목진료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정 수범자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수범자의 나무병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수목을 제외한 다른 수목의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 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인·법인·단체 등 수목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여부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지역주민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EU·일본·호주 등 주요국의 경우, 수목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⁸⁾ 수목의 소유자에 대해 수목진료 전문기관에 의한 수목진료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8) 【주요국 수목진료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황】

국가	주요내용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ISA(국제수목관리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culture) 자격증, 주정부 개별 자격증, 사업면허 등으로 구분
유럽	EAC(유럽수목관리위원회, European Arboricultural Council)에서 자격검정·발급(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 21개국) * 유럽수목작업자(ETW, European Tree Worker, 1999년 시작) 유럽수목기술자(ETT, European Tree Technician, 2004년 시작)
일본	수목의 진단 및 치료, 후계수의 보호육성과 함께 수목보호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지도를 행하는 전문가인 수목의 자격검정('01년 시작) * 대학을 수목의보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졸업자에게 '수목의보' 자격 부여 수목의보 1년 이상 경력자를 연수과정을 거쳐 '수목의' 자격 부여
호주	병해충방제면허, 병해충관리기술자면허 등 운영

자료 : 산림청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규모와 상관없이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업을 등록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경공사의 착공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수목보호협회’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종합하건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명백하게 제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목진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산림청의 수용의견,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의 수용곤란의견, 한국수목보호협회의 수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현행법은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될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개정안은 협회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회의 안정적인 역할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법 제21조의11제1항은 협회의 설립목적을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21조의11제4항제3호 중 “수목진료 기술진흥 및 정보 교류”는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교류”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21조의11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협회에 가입한 나무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조문의 “나무의사”를 “협회 회원”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2024년 7월말 기준 나무의사는 1,383명이고, 이 중 나무의사협회에 가입한 나무의사는 1,232명으로 파악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 제21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제1항에서는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에 대하여 3년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보수교육기관으로 협회가 지정(2022.3.23.)되어 있음.

2024년 7월말 기준 나무병원(863개소)에 근무하는 나무의사의 수는 896명으로 전체(총 1,383명)의 64.8%이고, 연간 보수교육인원은 실시 첫 해인 2022년도에 139명, 2023년 270명으로 파악됨.

산림청은 협회에서 보유한 실습교육장비(총 9대) 규모는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바, 연간 보수교육인원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협회에 대한 교육용 시설·장비 및 소요경비 등에 관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보수교육과정 운영 및 나무의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수목진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입법필요성은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유일한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으로서 협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나무의사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임을 고려할 때, 협회에 대하여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더욱이 산림분야의 다른 자격증(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없는 점⁹⁾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보수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나무의사 보수교육이 공익 달성에 필요한 것인지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과 같이 국민건강 또는 동물복지 등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강한 자격분야의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입법례¹⁰⁾¹¹⁾¹²⁾가 있음.

9)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매년 1회 이상(1회 교육시간은 20시간) 실시되는데, 국가의 재정지원은 없음. 다만,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3년마다 실시되는데,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총 7개 기관(산림조합중앙회, 강원대 평생교육원,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한국산림복지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등) 중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대해서만 5,000만원이 지원됨.

10)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1)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마.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개정안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와 나무의사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수목진료 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국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산림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임.

바.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수목진료경력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의사 등의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무의사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나무의사 등이 취업 또는 산림사업 등 참여에 있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나무의사 등이 근무했던 사업체의 폐업, 이전, 양도·양수 등으로 경력증명이 어려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체로의 취업 또는 각종 수목진료사업에 입찰 시 요구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한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수목진료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약칭 사용에 있어 현행법 제21조의4제4항에서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를 “나무의사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나무의사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21조의16제5항에서는 “나무의사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나무의사 등”의 문구의 경우 “나무의사가 하나의 예시로서 사용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제실무상 ‘등’은 명사에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과 현행조문 중 “나무의사 등”을 “나무의사등”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21조의16제6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제1항은 경력등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사.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은 나무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수목진료 신청인이 처방전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무의사등의 경력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무의사등이 경력등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무행위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벌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나무의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이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아. 부칙

안 제21조의16에서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경력 등의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부칙 제2조는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나무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을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나무

의사 등의 경력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 수목진료의 정의와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수목진료의 정의와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수목진료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2조제6호의2).
- 나. 나무병원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21조의9제4항 단서 신설 및 제5항 삭제).
- 다.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중 제4호 및 제5호를 협회에 가입한 나무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1조11제4항).
- 라.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 중 “나무병원의 실적”에는 수목진료실적, 연구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목진료실적’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1조의15제2항제4호 및 제3항).
- 마. 준용문에 준용되는 조항의 후단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신설하

는 한편, 현행법상 약칭 표기에 맞춰 “나무의사등”을 “나무의사
등”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1조의16제3항 등)

바. 벌칙의 구성요건이 되는 해당 조항의 번호를 수정함(안 제54조
제5항제7호 및 제7호의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의2 중 “예방(수세(樹勢) 유지·관리를 포함한다)하거나 치료(수세 회복을 포함한다)하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로 한다.

안 제21조의9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21조의10제1항제4호 중 “제21조의9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1조의9제5항”으로 한다.

안 제21조의11제4항제3호 중 “수목진료 기술진흥”을 “수목진료기술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나무의사”를 각각 “협회 회원”으로 한다.

안 제21조의15의 제목 중 “구축”을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실적 등 관련 정보”를 “수목진료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

공을 해당 호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의”를 “정보를 보유하는”으로,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 및”으로 한다.

안 제21조의16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나무의사등”을 “나무의사 등”으로, “신고를 하는”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으로, “신고의”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54조제5항제7호 중 “제21조의9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1조의9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21조의9제7항”을 “제21조의9제6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전”을 “전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2. ----- ----- ----- <u>예방(수세(樹勢) 유지·관리</u> <u>를 포함한다)</u> <u>하거나 치료(수세 회복을 포함한다)하기</u> ----- ----- -.	6의2. ----- ----- ----- <u>예방</u> <u>하거나</u> <u>치료</u> ----- ----- --.
6의3. ~ 14. (생략)	6의3. ~ 14. (현행과 같음)	6의3. ~ 14.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략)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	④ ----- -----	④ ----- -----

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산림병해충 방
제사업을 시행하거
나,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
목진료를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신 설>

--. <단서 삭제>

1. 2. (현행과 같
음)

⑤ 제4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
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피
해가 급격히 확
산될 우려가 있
어 긴급히 방제
가 필요한 경우

--. 다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
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수목의 소
유자가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2. (개정안과 같
음)

<삭 제>

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인 소유의 수
목으로서 소유자
가 직접 수목진
료를 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수목으로
서 해당 법인 또
는 단체의 대표
자(수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하여 법인 또
는 단체에 상시
고용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
술자를 포함한
다)가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
우

4. 「공동주택관리
법」 제5조에 따
라 자치관리하는

	<u>공동주택(300세 대 미만인 경우 만 해당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 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 목진료를 하는 경우</u>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개정안 제6항 과 같음)
<u><신 설></u>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 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 다.	⑥ (개정안 제7항 과 같음)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개정안 제8항 과 같음)
제21조의10(나무병원 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 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 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	① ----- ----- ----- ----- -----	① ----- ----- ----- ----- -----

하거나 1년의 범위 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나 무병원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제21조의9제5항</u> 을 위반하여 다 른 자에게 등록 증을 빌려준 경 우 4의2. ~ 6. (생 략) ② ~ ⑦ (생략) 제21조의11(한국나무 의사협회) ①·② (생략) ③ 협회 회원의 자 격과 임원에 관한 <u>사항, 협회의 업무</u> 등은 정관으로 정	----- ----- -----. ----- ----- ----- ----- -----. 1. ~ 3. (현행과 같 음) 4. <u>제21조의9제6항</u> ----- ----- ----- ----- 4의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한국나무 의사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항</u>----- -----	----- -----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u>제21조의9제5항</u> ----- ----- ----- ----- 4의2. ~ 6. (개정안 과 같음)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11(한국나무 의사협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	---

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

3. 수목진료 기술
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나무의사의 수
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나무의사의 현
황 관리 및 경력
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
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정관

④ -----

-----.

1.·2. (개정안과 같
음)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4. 협회 회원-----

5. 협회 회원-----

6.·7. (개정안과 같
음)

④ (생 략) <신 설>	<u>으로 정하는 업무</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21조의15(수목진료 정보체계의 구축)</u> ① 산림청장은 수 목진료에 관한 정 보체계(이하 “수목 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 계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u>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 련 정보</u> 2. <u>나무의사 보수교 육 현황</u> 3. <u>나무병원의 등록 현황</u> 4. <u>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보</u> 5. 그 밖에 수목진 료 정보에 관하여	⑤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15(수목진료 정보체계의 <u>구축· 운영</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u>수목 진료실적</u> 5. (개정안과 같음)
-----------------------------------	---	--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
목 진료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해당 호의 구분
에 따른 자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
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
른 사업자등록 정
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
료 관련 학력·경
력·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

③-----

-----다
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정보 또는 자료
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

-----.

1. (개정안과 같음)

2. -----

	<u>보 등 산림청장이</u>	-----
	<u>수목진료정보체계</u>	-----
	<u>구축·운영에</u> <u>필</u>	-----
	<u>요하다고</u> <u>인정하</u>	-----
	<u>는 수목진료 관련</u>	-----
	<u>자료 또는 정보로</u>	-----
	<u>서 대통령령으로</u>	-----
	<u>정하는 자료 또는</u>	-----
	<u>정보: 해당 자료</u>	----: -----
	<u>또는 정보의 관계</u>	---- <u>정보를 보유</u>
	<u>중앙 행정 기관의</u>	<u>하는</u> -----
	<u>장, 지방자치단체</u>	-----
	<u>의 장, 공공기관</u>	----- <u>공공기관</u>
	<u>의 장, 관계 기관</u>	<u>의 장 및</u> -----
	<u>· 법인 · 단체의</u>	-----
	<u>장</u>	--
<u><신 설></u>	<u>제21조의16(나무의사</u>	<u>제21조의16(나무의사</u>
	<u>등의 경력증명서</u>	<u>등의 경력증명서</u>
	<u>발급 등) ① 나무의</u>	<u>발급 등) ① (개정</u>
	<u>사 등이 나무병원</u>	<u>안과 같음)</u>
	<u>에 종사한 경력 등</u>	
	<u>을 인정받으려면</u>	
	<u>근무처·경력 및</u>	
	<u>자격 등(이하 “경력</u>	
	<u>등”이라 한다) 농림</u>	
	<u>축산식품부령으로</u>	

정하는 사항을 산
림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사
항이 변경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
무의사 등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
에 등재하여야 하
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
한 증명서(이하 “수
목진료경력증명서”
라 한다)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받
은 내용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제21조
의15제3항을 준용
하여 자료 또는 정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신
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
무의사등이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
고의 효력상실 처
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
증명서의 발급 절

----- .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나
무의사 등-----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한 ----
신고 또는 변경신
고의-----.

⑥ 제2항-----

	<u>차 및 관리, 그 밖</u> <u>에 필요한 사항은</u> <u>농림축산식품부령</u> <u>으로 정한다.</u>	----- ----- ----- -----.
제54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6. (생략) 7. <u>제21조의9제5항</u> 을 위반하여 나무 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u><신설></u>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 6. (현행과 같 음) 7. <u>제21조의9제6항-</u> ----- ----- ----- ----- 7의2. <u>제21조의9제</u> <u>7항을 위반하여</u> <u>나무병원의 명칭</u> <u>이나 이와 유사한</u> <u>명칭을 사용한 자</u>	제54조(벌칙)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1. ~ 6. (개정안과 같음) 7. <u>제21조의9제5항</u> ----- ----- ----- ----- 7의2. <u>제21조의9제</u> <u>6항</u> ----- ----- ----- -----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 음)	8. · 9. (개정안과 같 음)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⑥ ~ ⑧ (개정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11제3항 중 “사항, 협회의 업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의1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경력·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

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나무의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⑥ (생 략)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 ② (생 략)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항</u> ----- ----- ----- -----. <u>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u> <u>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u> <u>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u> <u>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u> <u>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u>

④ (생 략)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u><신 설></u>	<u>경력증명서 발급</u> 6. <u>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u> 7. <u>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u>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u>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u> 2. <u>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u>
---	---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경력·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신 설>

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
보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
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
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
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
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

제54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9. (생 략) ⑥ ~ ⑧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3. (생 략) ④ ~ ⑥ (생 략)	<u>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8.·9.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의5. (현행과 같음) <u>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u> <u>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나무의사 등</u>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